직렬(류) 직무기술서

선발단위	임용예정기관	직무분야	임용예정직급(직류)	선발예정인원
703	해양수산부 (☎ 044-200-5073)	선박안전	해양수산주사보 (일반선박)	5명

담당예정업무	○ 선박 및 해상교통안전 관리 업무 *** 지방해양수산청 배치** - 선박톤수 측정, 항만국통제(PSC) 점검, 선박안전관리체제(ISM) 심사 등 - 해상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 등
필요 지식(역량)	○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 「선박안전법」 등 선박안전 관계 법령에 대한 지식 ○ 선박 건조 및 선박 설계에 관한 지식

응시요건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	
	자격증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8에 따른 자격증 및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97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의 자격요건 선정	**관련분야: 선박승선 등 해기사 면허소지자 관련 업무**
		○ **대학에서 항해(또는 기관) 관련 학과 졸업** 또는 **법령에 따른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과 **3급 해기사(항해사<상선> 또는 기관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3급 해기사의 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승선경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유급휴가기간을 포함)이 있는 자 ○ **대학이나 해양·수산계 전문대학 졸업** 또는 **법령에 따른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과 **2급 해기사(항해사<상선> 또는 기관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자 ○ **전문대학 졸업 또는 법령에 따른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과 **2급 해기사(항해사 <상선> 또는 기관사)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2급 이상 해기사 면허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승선경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유급휴가기간을 포함)이 있는 자
		관련분야: 선박건조 및 선박설계 관련 업무
		○ **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 또는 **법령에 따른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 - **기계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또는 조선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조선기사 또는 일반기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조선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이 아래 기준점수 이상인 자

구분	토플 (TOEFL)	토익 (TOEIC)	텝스 (TEPS)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일반	IBT 86	790	385	77(level2)	700
청각장애*	-	395	231	-	420

* 청각장애의 정도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이거나,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위 표에서 정한 기준점수 이상인 자

붙임2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관련 주요 문의사항(FAQ)**

□ 응시자격요건 관련

Q1) 민경채에 응시하기 위한 경력의 범위에 공무원이나 군인 경력은 포함되지 않나요?

A1) 민경채는 다양한 현장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선발해 공직 개방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도입 되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공무원이나 군인, 군무원, 의무복무 경력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다만, 임기제(계약직)공무원 및 국공립대 교원(강의·연구) 경력,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군의관, 공익법무관·군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수의장교 단기의무복무기간은 예외적으로 인정

※ 외국 공무원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력과 동일한 것이 아니므로 관련분야에 해당한다면 인정

Q2) 원서접수 전에 응시자의 경력이나 학위, 자격증이 특정 선발단위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줄 수 있나요?

A2) 응시자의 경력·학위·자격증이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서류전형 위원이 평가하는 것으로서,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 응시자격요건 충족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필기시험 응시는 가능하며, 이후 서류전형 심사를 통해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평가받으실 수 있습니다.

Q3) 경력·학위·자격증 중 복수의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어떤 요건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A3) 1개 이상의 응시자격요건 충족 시 어떤 요건을 선택하는 것이 합격에 유리한지는 상대적이므로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응시자가 선택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선택하지 않은 다른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적격으로 평가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 추가합격 여부는 응시자격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Q4) 올해(2025년) 내로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또는 자격증) 취득 예정인데 응시가 가능한가요?

A4) 공고문 상의 최종시험 예정일(5급: 2025. 11. 8. / 7급: 2025. 11. 15.)까지 취득하는 경우 응시자격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단, 학위취득은 학위수여일(졸업증명서 등에 기재되는 일자)에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학위수여일이 최종시험 예정일 이전이어야만 함

Q5) 특정 기관에 근무하면서 동시에 대학 등에서 강의를 했는데, 별도 계산하여 경력 합산이 가능한가요?

A5) 같은 기간에 근무·연구(강의 포함)한 복수의 경력은 동시에 인정되어 합산되지 않습니다.

Q6) 선발단위별 응시요건은 어떤 기준으로 설정되었나요?

A6)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을 기준으로 임용예정기관(부처)에서 해당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력·자격증 등으로 설정하였으며, 일부 선발단위는 임용예정직무의 특수성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요건을 강화·완화한 경우도 있습니다.

Q7) 선발단위별 우대요건은 모든 시험단계에서 인정되나요? 공통 우대요건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A7) 선발단위별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가점(5점)으로 반영되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또한 서류전형에서 가점(5점)으로 반영됩니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2·3급 점수 동일하게 반영

Q8) 학위나 자격증 요건에 추가로 요구되는 경력은 인정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A8) 학위나 자격증 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되며, 경력요건과 마찬가지로 법인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을 의미합니다. 공고문 상 **[경력의 범위]** 항목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퇴직 후 3년내 경력" 조건은 학위·자격증 요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9) 비정규직(대학 시간강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도 합산되어 인정받을 수 있나요?

A9) 비정규직이라도 관련분야 경력임이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전임(전일제)으로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주 40시간 기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예)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근무한 경우 4년 × (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A9-1) 단, 각종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며 강의시간 외에도 강의를 위한 연구 및 준비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40시간이 아닌 **주 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여 경력기간으로 인정합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제6조(교원 등의 교수시간) 참고

※ 예) 시간강사로 1년간 주 6시간 강의한 경우 1년 × (6시간/9시간) = **8개월 인정**

Q10)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어학성적은 언제까지 취득하면 되나요?

A10)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어학성적은 **서류전형등록 마감일(2025. 8. 27.예정)**까지 기준점수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면 인정됩니다.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 FLEX, SNULT, 신HSK, JPT)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니, 해당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최종시험 예정일(5급 2025. 11. 8. / 7급 2025. 11. 15.) 전에 만료**되는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사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 원서접수 관련

Q1) 원서접수를 하려면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가입해야만 하나요?

A1) 그렇습니다. 응시원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하므로, 응시원서 접수를 위해서 반드시 가입해야만 합니다.

Q2) 민경채 5급과 민경채 7급 시험에 동시에 지원할 수 있나요?

A2) 민경채 5급과 민경채 7급은 필기시험 날짜가 동일하므로 동시에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민경채 5·7급과 공채 7급은 동시에 원서접수가 가능하나, 필기시험일이 동일하므로 하나의 시험의 필기시험만을 응시하실수 있습니다.

Q3) 여러 선발단위에 지원하거나 다수의 응시자격요건을 선택할 수 있나요?

A3) 응시원서는 1개 선발단위의 1개 응시자격요건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Q4) 응시원서를 일단 접수한 후에 내용을 수정할 수 있나요?

A4) 원서접수기간(2025. 6. 2. ~ 13.) 동안에는 내용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서접수 종료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며, (1차, 2차) 취소기간 중에는 취소만 가능합니다.

※ 1차 취소기간(2025. 6. 14. ~ 16.), 2차 취소기간(2025. 7. 7. ~ 9.)

Q5) 원서접수를 완료했는데, 응시표는 언제부터 출력이 가능한가요?

A5) 응시표는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일(7. 11. 예정) 이후 출력 가능합니다.

□ 필기성적 사전 공개 관련

Q1) 필기성적 사전 공개는 언제 어떻게 확인하는 건가요?

A1) 필기시험이 종료되면 대략 일주일 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의 '시험문제/정답' → '문제-정답 안내' 항목에 최종 정답이 게시됩니다. 이때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의 '마이페이지'→'합격/성적 조회' 항목에서 일정 기간동안 필기성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필기성적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내 이의제기와 답안지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응시자의 답안지 재검증 결과를 해당 신청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7월 11일 예정된 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를 통해 다시 안내 예정입니다.

□ 모의고사 서비스 관련

Q1) 모의고사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는 것인가요?

A1) 필기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자의 편의 강화를 위해 최근 3년간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의 기출문제를 모의고사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의 '시험문제/정답' → '모의고사' 항목에서 응시 가능하며, 답안을 제출하면 과목별 점수와 문항별 정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기출문제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2)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의 '시험문제/정답' → '문제/정답 안내' 항목에서 연도별 기출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 제출 관련

Q1) 증빙서류는 언제 제출하는 건가요?

A1) 증빙서류 제출시기는 면접 합격(예정)자 공개(2025.11.19. 예정) 후로 예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면접 합격(예정)자 공개 이후, **합격(예정)자에 한해서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방법 등은 면접시험 장소 공고시 상세히 안내 예정입니다.

□ 임용 등 합격 이후 관련

Q1) 최종합격 후 임용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A1) 최종합격자는 2026년 상반기 중 인사혁신처(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기본교육을 거쳐 임용될 예정입니다.

※ 기관 사정에 따라 임용 후 기본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음

※ '25년 교육일정: (5급) 2025. 2. 10. ~ 3. 28. / (7급) 2025. 2. 11. ~ 3. 7.

Q2) 최종합격 후 호봉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A2) 신규채용 시 초임호봉은 채용 전의 경력을 감안하여 **임용예정기관에서 운영하는 「호봉경력평가심의회」에서 획정**하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 별표17 경력환산율표 등에 따라 최대 100%까지 인정됩니다.

※ 다만, 응시자격요건의 근무경력과 호봉획정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호봉획정 시 해당 근무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Q3) 민경채 직무별 합격자는 차후 해당 직무에서만 계속 일하게 되는 건가요?

A3) 민경채를 통해 임용된 공무원은 현행 법령상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소속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이 지나야 전보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으로는 5년의 전출제한 기간이 지나야 전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문경력관으로 선발된 최종 합격자는 「전문경력관 규정」에 따라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소속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는 5년이 지나야 전보할 수 있으며, 소속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7년의 전출제한 기간이 지나야 전출할 수 있습니다.(직위 이동은 제한됨)